

생명윤리정책연구 자유공모 지원사업 관리 지침

제정 2024.10.2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하 “정책원”이라 한다)에서 수행 및 지원하는 「생명윤리정책연구 자유공모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지원사업의 수행·관리에 관하여 법령이나 기타 규정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제3조(용어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내부 위원”이란 정책원 내부 임직원 중 당해 연도 지원사업의 평가를 위하여 선정된 평가위원을 말한다.
2. “외부 위원”이란 생명윤리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외부 전문가 중 당해 연도 지원사업의 평가를 위하여 선정된 평가위원을 말한다.
3. “연구책임자”란 연구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격과 경험을 갖추고 있는 자로, 연구 수행과정과 결과 등을 책임지고 해당 연구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공고 및 선정

제4조(사업 공고) ① 정책원장은 당해 연도 초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원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1. 공모대상과제
2. 연구기간 및 지원규모
3. 지원 자격 및 지원 방법
4. 연구과제 선정 방법 및 협약 체결
5. 연구 수행 및 결과 제출

6. 연구과제 선정 평가기준

7. 기타 협약 체결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정책원 내규 및 당해 연도 예산 범위를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제5조(신청서 접수) ① 정책원장은 기간 내에 제출된 지원사업 신청(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 연구윤리확약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접수하고 연구책임자에게 접수결과를 통보한다.

② 정책원장은 제1항에 따른 제출 서류의 적절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연구책임자에게 제출 서류의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정책원장은 지원 자격 부적합으로 확인된 연구과제에 대해 접수를 거부하거나 반려할 수 있으며, 이때 해당 사항을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한다.

제6조(평가위원 구성) ① 정책원장은 당해 연도 지원사업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선정 및 관리를 위하여 평가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 정책원장은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평가위원을 내부 위원 2인 이상, 외부 위원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평가위원은 다음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연구과제 선정 평가 및 선정 회의 참석
2. 연구과제 중간 평가
3. 연구과제 최종 평가 및 최종보고회 참석
4. 기타 연구과제의 관리를 위하여 정책원장이 요청한 사항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과제의 원활한 평가 및 선정을 위해 정책원장은 내부 위원 2인 이상에게 제출서류의 적정성에 관한 사전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연구과제 평가) ① 평가위원은 평가기준[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연구주제의 독창성, 학문 발전 공헌도, 연구내용 및 방법, 선행연구, 연구역량 영역에 대해서 평가한다. 이때 지원사업 신청(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는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자(연구보조원 포함)의 인적사항이 삭제된 채로 평가위원에게 송부된다.

② 평가위원은 제1항에 따른 평가영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음 각호의 평가항목을 참작하여 평가를 진행한다.

1. 연구주제의 독창성
2. 학문적 가치
3. 학문의 파급효과
4. 연구내용의 적절성
5. 연구방법의 타당성
6. 실행계획의 구체성
7. 선행연구의 검토
8. 인용 및 참고문헌
9. 연구진 구성
10. 연구실적
11. 연구능력

③ 평가위원은 위 항목에 대한 평가서[별지 제5호 서식] 및 서약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고, 이를 정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연구과제 선정) ① 정책원장은 평가서 점수를 토대로 당해 연도 지원사업 연구과제를 선정한다. 연구과제 선정 수는 당해 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산정하여 정한다.

② 연구과제 선정시에는 평가위원 간 점수 편차를 고려하기 위해 각 평가위원의 평가 순위를 종합한 결과와 각 평가위원 점수의 평균으로 순위를 정한 결과를 모두 고려한다. 평가위원 간 평가 순위 및 점수 편차가 큰 과제에 대해서는 논의를 통해 선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책원장은 평가위원의 논의와 결정사항을 회의록의 형태로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④ 정책원장은 선정된 연구과제가 정책원 연구윤리지침 및 생명윤리법 등 관련 법률이나 지침을 위배하는 등 정책원에서 해당 과제를 지원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제3항 제4호에 따라 평가위원의 검토를 받아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결과 통보 및 이의 신청) ① 정책원장은 선정된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에게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서를 익명으로 처리하여 선정 결과와 함께 통보하고, 선정된 연구과제 목록을 정책원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② 선정된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는 평가서의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야 하며, 연구계획 수정 및 보완 요청이 있는 경우 반영 여부 등을 기재하여 고지한 날까지 정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구책임자는 선정 결과에 따라 납득할 만한 이유를 갖추어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연구책임자의 재평가 요청에 대하여 정책원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6조에 따른 평가위원을

소집하여 재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재논의된 결과에 대하여는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④ 정책원장은 평가위원의 재논의와 결정사항을 회의록의 형태로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3장 협약 체결 및 선금 지급

제10조(협약 체결) ① 정책원장과 선정된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생명윤리정책연구 자유공모 지원사업 협약서(이하 “협약서”라 한다)[별지 제7호 서식]의 각 조항들을 함께 확인하면서 최종적으로 협의 및 확정한다.

② 정책원장과 연구책임자는 협약서에 서명 날인하고, 협약서를 각각 1부씩 나눠 가진다.

제11조(선금 지급)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비 청구서 생명윤리정책연구 자유공모 지원사업 연구개발비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별지 제8호 서식]를 작성하고 붙임서류와 함께 정책원장에게 제출한다.

② 선금금에 대하여 정책원장은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총 연구개발비의 70%를 지급한다.

제12조(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연구책임자는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보건복지부 「용역사업 계약 편람」에 따라 관리 및 사용한다.

제4장 연구과제 관리 및 평가

제13조(중간 평가) ① 정책원장은 연구과제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중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때 중간 평가는 서면 평가로 진행할 수 있다.

② 연구책임자는 중간 평가 전 중간보고서를 정책원장이 고지한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간 평가 시 평가위원은 평가의견서[별지 제9호 서식]를 작성하여 정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연구책임자는 중간 평가 결과를 연구 내용에 적극 반영하여야 하며, 중간 평가 의견에 따라 연구계획 수정 및 보완 요청이 있는 경우 반영 여부 등을 기재하여 고지한 날까지 정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4조(최종 평가)** ① 연구책임자는 최종보고서를 협약서[별지 제7호 서식]에서 정한 연구 기간 종료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정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정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종보고회 일정 등을 고려하여 최종보고서 제출 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된 사항을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연구책임자는 정책원장이 주최하는 최종보고회에 참석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 ④ 평가위원은 최종보고서에 대한 평가의견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작성하여 정책원장이 고지한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연구책임자는 최종 평가 결과를 연구 내용에 적극 반영하여야 하며, 최종 평가 의견에 따라 보완 요청이 있는 경우 평가 결과 반영 여부 요약표[별지 제11호 서식]에 반영 여부 등을 기재하고, 수정된 최종보고서를 고지한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제15조(검수 및 잔금 지급)** ① 정책원장은 제14조제5항 및 제15조제3항의 사항을 검토하여 검수를 진행한다.
- ② 정책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수 진행 후 잔금에 대한 청구서[별지 제8호 서식]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총 연구개발비의 30%를 지급한다.
- ③ 정책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것을 확인한 경우 연구책임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일부 금액을 공제한 후 잔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때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잔금 지급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정책원 연구윤리지침 위반
 2. 제17조 협약의 해지에 준하는 사유 발생
 3. 연구책임자가 최종 평가에서 60점 이하의 점수를 받은 경우

제5장 지원사업의 기본 원칙

- 제16조(연구책임자의 책무)** ① 연구책임자는 해당 연구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격과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연구 수행과정과 결과 등을 책임지고 해당 연구를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
- ②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1. 지원사업의 신청·접수
 2. 협약 체결 및 연구개발비의 청구
 3. 중간 평가 보고서 제출

4. 최종 평가 보고서 제출 및 최종보고회 참석
 5. 연구과제의 성과보고
 6. 공동연구자(연구보조원 포함)가 윤리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7. 그 밖에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정책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 ③ 연구책임자는 정책원장의 사전 승인 없이 본 지원사업에 대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본 지원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지 않아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제17조에 따라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④ 연구책임자는 정책원 연구윤리지침 및 생명윤리법 등 관련 법률이나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⑤ 생명윤리법에 따른 인간대상연구의 수행을 바탕으로 수행된 연구과제의 경우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정책원장은 필요시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승인 획득 여부 또는 심의 면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연구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 ⑥ 정책원장은 연구책임자의 연구수행 사항을 수시로 감독할 수 있고 연구책임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7조(협약의 해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사업의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연구책임자의 태만으로 소정 기일 내에 연구과제를 완성할 가망이 없을 때
 2. 정책원장의 사전 승인 없이 본 협약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연구과제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였을 때
 3. 연구책임자가 연구수행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연구진행이 정체되어 소정의 연구 성과를 기대하기 극히 곤란하거나 또는 연구과제를 완수할 능력이 없어졌다고 인정될 때
- ② 협약이 해지되면 연구책임자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기성부분에 대한 정산을 인정할 수 있다.

제18조(연구결과의 활용)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 종료 후 1년 이내에 연구 결과물을 학술지에 투고하고 그 결과를 정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책임자는 향후 정책원에서 실시하는 사업 지원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1. 논문을 1년 이내에 투고하지 않은 경우
 2. 투고 후 결과를 정책원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3. 정책원의 지원을 받았다는 내용을 논문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

제19조(지적재산권 등) ① 지원사업 협약에 따른 연구의 결과로 발생한 보고서와 그 내용 및 결과물의 권리 및 각종 지적재산권은 정책원장의 소유로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정책원장의 승인 없이 최종보고서 제출 이전에 연구결과를 대외적으로 발표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③ 최종보고서 제출 이후 지원사업 협약에 따른 연구의 결과를 학술지 등 다른 곳에 게재하는 것에 대한 권한은 연구책임자에게 있다. 다만, 학술지 게재 시, “본 연구는 『 ____년 생명윤리정책연구 자유공모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재)국가생명윤리정책원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았습니다(This research was funded by the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Bioethics Policy(KoNIBP), awarded by the ____ Bioethics Policy Research Program).” (ㅇ)라고 사사 표기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자료의 제출) 정책원장은 지원사업이 완료된 후 사업의 평가 및 활용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책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부 칙 <2024. 10. 23.>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정책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처리된 것은 연구과제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르고,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별지 제1호 서식]

생명윤리정책연구 자유공모 지원사업 신청(계획)서

※관리번호

주 제			
연 구 과 제 명	국문		
	영문		
연 구 책 임 자	소속기관명		직급(위)
	연구자 등록번호	<small>※ 한국업적통합정보시스템(www.kri.go.kr)의 연구자등록번호 ※ 해당 시스템 내 소속 등 정보 업데이트와 연구자 정보 검색(조회) 가능 하도록 설정 바람</small>	
	성명		전공 (세부전공)
	연락처		e-mail
연구기간	협약일로부터 ~ 년 월 일		
연 구 참 여 자	총 참여연구원 (연구책임자 포함)	명	연구원 (명) 연구보조원 (명)
연구개발비	원		
본인은 불임의 연구를 수행하고자 신청(계획)서를 제출하며, 지원사업에 선정될 경우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서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소기의 연구 성과를 거둘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불임 :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2. 연구윤리확약서 1부. 끝. 연구책임자 (인 또는 서명) (재)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 귀하			

※관리번호는 작성하지 않음(접수 시 부여)

[연구요약문]

연구과제명	
<input type="checkbox"/> 연구목표 <i>휴먼명조체, 줄간격 160%, 글씨크기 11pt</i>	
<input type="checkbox"/> 연구내용 및 방법	
<input type="checkbox"/>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요약문은 1 Page 이내로 작성

I . 연구개요

1. 연구 필요성

- ※ 기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필요성 기술
- ※ 휴먼명조체, 줄간격 160%, 글씨크기 11pt
- ※ 페이지 제한 없음

2. 연구 목표

II .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 ※ 연구과제의 내용 등을 명확하게 기술

2. 연구 방법

- ※ 연구과제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방법론(접근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III . 연구추진계획

- ※ 연구추진체계를 도식적으로 간략히 기술

IV .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1. 기대성과

- ※ 기대되는 결과를 정책적, 기술적 측면에서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기술

2. 활용방안

- ※ 예상되는 활용 분야 및 방안을 상세히 기술

V . 참고문헌

[연구책임자 인적 사항 및 연구개발실적]

(1) 인적사항

성명	국문				전공 (세부전공)	
	영문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e-mail	
소속	기관명		직급(위)		연구자 등록번호	

(2) 학력사항

연도		학교 (대학교, 단과대, 과)			
부터	까지	대학교	단과대	학과	전공명
최종학위 논문제목					

(3) 경력사항

번호	기간	기관명	직위	담당업무

(4) 연구 수행실적 (최근 3년) ※ 해당자만 작성

번호	연구과제명	지원기관	역할	연구비	연구기간	논문발표 학술지명
1						

(5) 저서 (최근 3년) ※ 해당자만 작성

번호	저서명	발행년도	출판사	발행지
1				

(6) 논문발표실적 (최근 3년) ※ 해당자만 작성

번호	구분	논문제목	게재지	게재권 (호)	게재면	게재년월	역할	연구비 지원기관
1								

※ 연구논문 발표 학술지는 국외, 국내 순서로 기재

※ 상기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본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취소 및 협약체결 취소 등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구책임자

(인 또는 서명)

[연구원/연구보조원 인적 사항 및 연구개발실적]

※ 해당자만 작성, 인원수에 따라 페이지 추가 가능

(1)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전 공 (세부전공)	
	영 문				
소 속	기관명		직급(위)	연구자 등록번호	

(2) 학력사항

연도		학교 (대학교, 단과대, 과)			
부터	까지	대학교	단과대	학과	전공명
최종학위 논문제목					

(3) 경력사항

번호	기간	기관명	직위	담당업무

(4) 연구 수행실적 (최근 3년) ※ 해당자만 작성

번호	연구과제명	지원기관	역할	연구비	연구기간	논문발표 학술지명
1						

(5) 저서 (최근 3년) ※ 해당자만 작성

번호	저서명	발행년도	출판사	발행지
1				

(6) 논문발표실적 (최근 3년) ※ 해당자만 작성

번호	구분	논문제목	게재지	게재권 (호)	게재면	게재년월	역할	연구비 지원기관
1								

※ 연구논문 발표 학술지는 국외, 국내 순서로 기재

※ 상기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본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취소 및 협약체결 취소 등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구원/연구보조원

(인 또는 서명)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연구책임자용)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의 『___년 생명윤리정책연구 자유공모 지원사업』의 연구 과제 신청 및 협약체결을 위해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이에 본인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수집 · 이용 목적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사업 진행과 관련된 업무(개인 식별, 연락 등)에 필요한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보관 및 이용하고자 함 - 협약 체결 시 연구개발비 입금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계좌정보(거래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추가 - 결과보고서 출판 시 성명, 소속기관명 및 직급(위)
항목	• 필수정보: - 성명(국문, 영문), 소속기관명 및 직급(위), 전공(세부전공), 주소, e-mail, 연락처, 연구자등록번호, 생년월일, 학력사항, 경력사항, 연구 수행실적, 저서, 논문발표실적 - 협약 체결 시 연구비 입금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계좌정보(거래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추가
보유 및 이용 기간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5년 이후 파기합니다. 다만 개인정보 삭제 요구 시 법령의 절차에 따라 해당 정보는 삭제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아래 개인정보 제공 등에 관해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필수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신청서 제출 및 지원사업 협약 체결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서 제출 및 협약 체결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수집 · 이용 동의 여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p style="text-align: right;">필수 정보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p>
민감정보 동의 여부	해당사항 없음
제3자 제공여부	해당사항 없음

성 명

(자필서명)

년 월 일

(재)국가생명윤리정책원 귀중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연구원/연구보조원용)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의 『____년 생명윤리정책연구 자유공모 지원사업』의 연구 과제 신청 및 협약체결을 위해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이에 본인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수집 · 이용 목적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사업 진행과 관련된 업무(개인 식별, 연락 등)에 필요한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보관 및 이용하고자 함 - 결과보고서 출판 시 성명, 소속기관명 및 직급(위)
항목	• 필수정보: - 성명(국문, 영문), 소속기관명 및 직급(위), 전공(세부전공), 연구자등록번호, 학력사항, 경력사항, 연구 수행실적, 저서, 논문발표실적
보유 및 이용 기간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5년 이후 파기합니다. 다만 개인 정보 삭제 요구 시 법령의 절차에 따라 해당 정보는 삭제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아래 개인정보 제공 등에 관해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필수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신청서 제출 및 지원사업 협약 체결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서 제출 및 협약 체결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수집 · 이용 동의 여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필수 정보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민감정보 동의 여부	해당사항 없음
제3자 제공여부	해당사항 없음

성 명

(자필서명)

년 월 일

(재)국가생명윤리정책원 귀중

[별지 제3호 서식]

※ 모든 연구참여자 작성 필요

연구윤리확약서

1. 본인은 (재)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구윤리지침을 숙지하였으며 연구과정의 객관성·신뢰성 및 연구 결과의 공익성·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윤리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 이 지침을 위반하는 경우 본인은 이에 따른 제재를 받게 됨을 인지하고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서명)

(재)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 귀하

평 가 기 준

구 분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내용
연구주제 (40)	독창성 (20)	연구주제의 독창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금까지 연구되지 않았던 주제인가 ○ 새로운 지식 또는 이해를 창출하는가
	학문발전 공헌도 (20)	학문적 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의 이론을 발전시키는가 ○ 기존의 연구 방법론을 발전시키는가
		학문의 파급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문적 담론을 활성화하는가 ○ 연구 결과가 정책 개발에 환류될 가능성이 높은가
연구내용 (60)	연구내용 및 방법 (30)	연구내용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규모와 관련하여 연구내용 및 범위가 적절한가 ○ 연구되어야 할 핵심적인 내용들을 포괄하는가
		연구방법의 타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문제 해결에 적합한 접근방법인가 ○ 자료수집 방법은 적절한가
		실행계획의 구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추진과정이 체계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 ○ 자료수집, 분석, 해석 방법과 도구가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
	선행연구 (10)	선행연구의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요한 선행연구들이 정확하고 치밀하게 분석되었는가
		인용 및 참고문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고문헌이 정확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연구역량 (20)	연구진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진이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가
		연구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업적이 축적되어있는가
		연구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학문적 전문성이 있는가 ○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적 전문성이 있는가

[별지 제5호 서식]

평 가 서

연구과제명 :

관리번호 :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점수	평가의견
독창성 (20)	연구주제의 독창성(20)		
학문발전 공헌도 (20)	학문적 가치(10)		
	학문의 파급효과(10)		
연구내용 및 방법 (30)	연구내용의 적절성(10)		
	연구방법의 타당성(10)		
	실행계획의 구체성(10)		
선행연구 (10)	선행연구의 검토(5)		
	인용 및 참고문헌(5)		
연구역량 (20)	연구진 구성(5)		
	연구실적(10)		
	연구능력(5)		

20 년 월 일

평가위원 성명_____ (서명)

[별지 제6호 서식]

서 약 서

성 명		소속기관명	
직 급(위)		생년월일	
연락처		e-mail	

상기 본인은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의 [20 년 생명윤리정책연구 자유공모
지원사업]의 선정 평가에 참여함에 있어, 보안에 유의하고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생명윤리정책연구 자유공모 지원사업 협약서

사업명 : ____년 생명윤리정책연구 자유공모 지원사업

연구과제명 :

연구개발비 : 원(₩ 원(소득세 포함))

연구기간 : 협약체결일 ~ 년 월 일

협약 당사자

(갑) (재)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

(을) 소 속 :

직 급(위) :

성 명 :

위 지원사업 수행에 관하여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하 “정책원”)에서 수행 및 지원하는 「생명윤리정책연구 자유공모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에 대한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의 기간) 본 협약은 협약체결일부터 ____년 ____월 ____일로 한다.

제3조(연구개발비 지급) ① 선금금에 대하여 (갑)은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총 연구개발비의 70%를 (을)에게 지급한다.

② 잔금은 최종 평가에 대한 (갑)의 검수가 완료된 후 (을)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갑)은 잔금에 대한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총 연구개발비의 30%를 잔금으로 지급한다.

③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것을 확인한 경우 (을)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일부 금액을 공제한 후 잔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때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잔금 지급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정책원 연구윤리지침 위반
2. 본 협약서 제6조제1항 각 호 협약의 해지에 준하는 사유 발생
3. (을)이 최종 평가에서 60점 이하의 점수를 받은 경우

제4조(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을)은 (갑)으로부터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보건복지부 「용역사업 계약 편람」에 따라 관리 및 사용한다.

제5조(연구책임자의 책무) ① (을)은 본 지원사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격과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연구 수행과정과 결과 등을 책임지고 해당 연구를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을)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1. 협약 체결 및 연구개발비의 청구
2. 중간 평가 보고서 제출
3. 최종 평가 보고서 제출 및 최종보고회 참석
4. 연구과제의 성과보고
5. 공동연구자(연구보조원 포함)가 윤리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6. 그 밖에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갑)이 요청하는 사항

③ (을)은 (갑)의 사전 승인 없이 본 지원사업에 대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본 지원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지 않아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제6조에 따라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을)은 정책원 연구윤리지침 및 생명윤리법 등 관련 법률이나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생명윤리법에 따른 인간대상연구의 수행을 바탕으로 수행된 연구과제의 경우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갑)은 필요시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승인 획득 여부 또는 심의 면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을)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⑥ (갑)은 (을)의 연구수행 사항을 수시로 감독할 수 있고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⑦ (을)은 연구과제 선정 평가, 중간 평가, 최종 평가 결과를 연구 내용에 적극 반영하여야 하며, 각 평가 의견에 따라 연구 계획 수정 및 보완 요청이 있는 경우 반영 여부 등을

기재하여 고지한 날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협약의 해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의 태만으로 소정 기일 내에 본 지원사업을 완성할 가망이 없을 때
 2. (갑)의 사전 승인 없이 본 협약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본 지원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였을 때
 3. (을)이 연구수행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연구진행이 정체되어 소정의 연구 성과를 기대하기 극히 곤란하거나 또는 지원사업을 완수할 능력이 없어졌다고 인정될 때
- ② 협약이 해지되면 (을)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기성부분에 대한 정산을 인정할 수 있다.

제7조(최종 평가) ① (을)은 최종보고서를 협약서에서 정한 연구기간 종료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갑)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종보고회 일정 등을 고려하여 최종보고서 제출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된 사항을 (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을)은 (갑)이 주최하는 최종보고회에 참석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④ (을)은 최종 평가 결과를 연구 내용에 적극 반영하여야 하며, 최종 평가 의견에 따라 보완 요청이 있는 경우 「생명윤리정책연구 자유공모 지원사업 관리 지침」(이하 “관리 지침”) 제14조 제5항에 따른 [별지 제11호 서식]에 반영 여부 등을 기재하고, 수정된 최종보고서를 (갑)이 고지한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연구결과의 활용) ① (을)은 연구 종료 후 1년 이내에 연구 결과물을 학술지에 투고하고 그 결과를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을)은 향후 정책원에서 실시하는 사업 지원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1. 논문을 1년 이내에 투고하지 않은 경우
2. 투고 후 결과를 정책원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3. 정책원의 지원을 받았다는 내용을 논문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

제9조(지적재산권 등) ① 본 협약에 따른 연구의 결과로 발생한 보고서와 그 내용 및 결과물의

권리 및 각종 지적재산권은 (갑)의 소유로 한다.

② (을)은 (갑)의 승인 없이 최종보고서 제출 이전에 연구결과를 대외적으로 발표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③ 최종보고서 제출 이후 본 협약에 따른 연구의 결과를 학술지 등 다른 곳에 게재하는 것에 대한 권한은 (을)에게 있다. 다만, 학술지 게재 시 아래와 같이 사사 표기를 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 _____년 생명윤리정책연구 자유공모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재)국가생명윤리정책원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았습니다”

“This research was funded by the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Bioethics Policy(KoNIBP),
awarded by the _____ Bioethics Policy Research Program).”

제10조(자료의 제출) (갑)은 본 지원사업이 완료된 후 지원사업의 평가 및 활용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기타) 이 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해석상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 지침” 과 본 협약을 구속하는 상위 협약 내용을 우선으로 하고, 그 밖의 사항은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갑)과 (을)은 협약서에 서명 날인하고, 협약서를 각각 1부씩 나눠 가진다.

년 월 일

(갑) (재)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 (인) [직인]

(을) _____

(인)

평 가 의 견 서

연구과제명			
관리번호		연구책임자	
문제점	연구 중간 진행까지 문제점 분석(예, 연구 배경의 적절성, 연구목표와의 일관성, 연구 방법의 타당성 등)		
보완사항	최종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문제점)보완사항 안내		
제안사항	최종 연구보고서의 완성도 및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추가 반영사항 제안		
총평			
평가자	평가일		성명
	년 월 일		(서명)

평 가 의 건 서

연구과제명			
관리번호			연구책임자
평가항목	배 점	점 수	평가의견
연구주제의 참신성과 타당성	20		<i>평가항목에 따른 평가의견 간략 기재</i>
논지전개 및 연구방법 타당성	25		
연구의 논리적 완결성	25		
연구결과의 학문적·정책적 기여도	20		
참고문헌 인용의 적합성	10		
총 평	<i>연구의 강·약점, 향후 보완 및 제안사항 등 전체적 총평 작성</i>		
평가자	평가일	성명	
	년 월 일	(서명)	

[별지 제11호 서식]

평가 결과 반영 여부 요약표

연구과제명:

관리번호:

연구책임자:

평가 위원	평가의견	반영 여부 (연구자 자체 평가)	내용	검수의견 ※ 정책원 기재